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(한병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75 발의연월일: 2024. 6. 11.

발 의 자: 한병도·신영대·조 국

김윤덕 • 이해식 • 임오경

장철민 • 전진숙 • 진선미

윤준병 • 이원택 • 강유정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나 성범죄로 인해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가 일정 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 등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피해장애인 쉼터와 피해장애아동 쉼터, 「평생교육법」에 따라 설치되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취업제한 규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종사자 등에 대한 성범죄 경력 등의 조회가 불가하고, 해당시설의 장애인들이 학대 및 성범죄 피해에 노출되어 있다는 주장이제기되고 있음.

이에,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자나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장애인 관련 기관에 피해장애인 쉼터와 피해장애아동 쉼터,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하려는 것임(안 제59조의3).

법률 제 호
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9조의3제1항제1호 중 "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및 제59조의11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"을 "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, 제59조의11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, 제59조의13의 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"로하고,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1. 「평생교육법」 제20조의2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9조의3(장애인관련기관에의	제59조의3(장애인관련기관에의
취업제한 등) ① 법원은 장애	취업제한 등) ①
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(「성	
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	
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	
죄 또는 「아동・청소년의 성	
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	
호에 따른 아동・청소년대상	
성범죄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로	
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	
경우에는 판결(약식명령을 포	
함한다. 이하 같다)로 그 형 또	
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	
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	
유예 • 면제된 날(벌금형을 선	
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	
된 날을 말한다)부터 일정기간	
(이하 "취업제한기간"이라 한	
다)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	
시설 또는 기관(이하 "장애인	
관련기관"이라 한다)을 운영하	
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	
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	

없도록 하는 명령(이하 "취업 제한명령"이라 한다)을 장애인 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(이하 "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"이라 한다)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(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 지를 말한다)하여야 한다. 다 만,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 은 경우, 그 밖에 취업을 제한 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 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 제54조의 장애인자립생활지 원센터, 제58조의 장애인복지 시설 및 제59조의11의 장애인 권익옹호기관

2. ~ 10. (생 략) <신 설>

② ~ ③ (생 략)

<u>-</u>
1
<u>제58조의 장애인복지</u>
시설, 제59조의11의 장애인권
익옹호기관, 제59조의13의 장
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아동
쉼터
<u> </u>
2. ~ 10. (현행과 같음)
2. ~ 10. (현행과 같음)